10.18219/ddmh..124.202312.103

滄溪 林泳의 疏箚 一考

宋赫基*

Ⅰ. 緖: 학자 임영의 疏箚
Ⅱ. 出處觀과 出仕의 귀결
Ⅲ. 疏箚 인식과 작품 개관
Ⅳ. 求言에 응한 萬言疏 분석
Ⅴ. 結: 임영 소차의 의의

• 국문초록

林泳(1649~1696)은 평생 학문 연마에 전념하고자 하는 뜻을 지닌 성리학자였지만, 科擧로 立身한 이상 出仕와 辭職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임영은 疏箚를 통해 辭職과 論事의 의견을 개진했다. 임영은 한때 숙종의 인정을 받으며 조정에 출사하여 經世의 이상을 시행하고자 했지만, 그 기대는 얼마 가지 못했다.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기는커녕 숙종의 감정적인 대응만이 돌아오는 상황을 몇 차례 겪은 임영은, 숙종의 求言에 따른 萬言疏에 경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총체적으로 담아 올렸다. 이에 대한 숙종의 반응마저 부정적이자 임영은 조정에 다시 나가지 않았고, 이후의 소차에서는 논사 없이 사직을 청하는 내용으로 일관했다.

본고는 소차의 작성 배경과 주제 구현 방식 및 소통 양상을 통해서 임영이 지녔던 경세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었다. 그 내용은 聖學의 엄정한 기준으로 궁중 예산과 환관, 척신, 공신의 문제, 조세와 병역, 인사 제도와 국방 체제 등의 현안에 대해 내린 세부적인 진단과 대안들이다. 임영은 치밀한 단락 구성과 명확한 강령 부각, 그리고 억양법의 적절한 구사를 통해서, 爲民과 聖學의 정신을 당대의 구체적인 현안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정연한 논리로 구축했다.

임영은 疏箚의 내용 선정에 신중했을 뿐 아니라 서술과 표현의 전략에도 관심이

*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높았다. 임영의 문학적 재능이 가장 지속적으로 순도 높게 발휘된 문체가 소차였다. 임영은 숙종의 감정적 반응을 몇 차례 겪은 뒤에도 오히려 강도 높은 내용의 소차를 작성했다. 과감하게 올린 소차의 주된 내용은 '爲民을 근간으로 하는 聖學의 經世 意識'이었다. 임영이 만언소에서 숙종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궁중의 경비 절감과 환관 배제 문제를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민심을 얻기 위해 節用해야 하며 그 출발은 군주의 公心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聖學의 근본이 서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뚜렷하게 드러낸 것이다. 임영의 소차는 그가 평생 엄격하게 매진한 학문의 일관된 표출이었으며, 출사와 관련하여 한 말과 보여준 행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주제어 : 林泳(1649~1696), 疏箚, 辭職, 論事, 萬言疏, 聖學, 經世

Ⅰ. 緖: 학자 임영의 疏箚

滄溪 林泳(1649~1696)은 18세에 학문의 방향을 확립한 이래 평생 경전 연구와 자기 성찰로 일관한 '求道者'였다.[1] 『창계집』에 실려 전하는 6권의 讀書箚錄과 2권의 日錄, 그리고 심도 높은 학문 토론이 담긴 편지 10권을 일별하면 임영이 평생 얼마나 진중하고 철저한 태도로 학문에 매진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임영은 西人이 집권하던 시기 내내 관직에 제수되었다. 32세 되던 1680년 庚申換局 이후 바로 천거되어 성균관 전적에 제수된 이래 1689년 己巳換局에 이르는 시기 가운데 親喪을 치른 2년여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 관직이 끊이지 않았고, 1694년 甲戌換局과 함께 다시 제수가 시작되어 1696년 48세로 숨을 거둘 때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임영이 관직에 실제로 나아간 것은 드물다. 대개 아예 나가지 않았고 나가더라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창계집』 권3~5에 수록되어 전하는 소차는 모두 39편인데 그 가운데 21편은 辭職을 청하는 상소다. 사직 상소라고 해도 특정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겸하는 경우가 많고, 사직 자체도 일종의 정치 행위라 할 만하다.[2] 그 외에 論事疏 3편은 각각 淸使臣 접견 문제, 戶布法의 시행 문제를 논한 것과 求言 敎旨에 응하여 올린 萬言疏[3]로서, 모두 임영이 관직으로 서울 및 교외에 머물던 1680~1682년에 쓴 작품들이다. 그리고 홍문관에 있을 때 올린 箚子 10편과 擬進言藁 1편, 그리고 代作 4편이 전한다.

본고는 학자 임영이 끊임없이 관직에 제수된 배경, 완전한 處로 일관하지 않고 出과 處의 긴장을 유지한 사정과 실상 등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그가 疏箚를 어떻게 인식했으며 그 내용을 이루는 辭職과 論事에 어떤 의도와 배경이 있는지 살피는 데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리고 임영의 정치적 견해가 집결된 만언소를 분석하고 이 작품과 관련되는 본인과 주변의 언급을 통해 그 정황과 맥락을 고찰할 것이다.

임영은 17세기의 학자로서 일찍이 주목받았고,[4] 한국고전번역원의 『창계집』 완역

---

1) 이우성, 「滄溪集 解題-求道者의 사색과 철학」, 『국역 창계집』, 한국고전번역원, 2015.

2) 송혁기, 「사직상소문의 문학적 연구를 위한 일고」, 『한국한문학연구』 48, 한국한문학회, 2011.

3) 1682년에 올린 1만 2천여 자의 「應旨言事疏」(『滄溪集』 권4)를 가리킨다. 이하 본고에서는 이 작품을 萬言疏로 지칭한다.

4) 김광순, 「창계의 생애와 문학」, 『퇴계학과 유교문화』 14,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1986; 오종일, 「창계 임영의 학문과 학술사적 위치」, 『고문연구』 12, 한국고문연구회, 1999; 오종일, 「창계 임영의 학문

을 계기로 전반적인 심층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5] 다만 그의 疏箚 작품을 주된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6]

Ⅱ. 出處觀과 出仕의 귀결

1. 出處에 대한 세간의 평판과 임영의 입장

出處는 사대부 누구에게나 주어진 중요한 문제였다. 임영은 사직 상소를 통해 물러나야 하는 이유를 왕에게 설명해야 했을 뿐 아니라, 의문과 비판을 제기하는 주변의 인사들에게 그때그때의 상황 혹은 상대와의 親疏에 따라 침묵으로 감내하거나 이런저런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그에게 계속 주어진 질문은 科擧 응시와 관련된다. 관직에 나가지 않고 평생 학문에 전념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애초에 과거에 응시하지도 말거나, 기왕에 과거로 출사했으면 그 직분에 충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과 성리설」, 『동양철학연구』 20, 동양철학연구회, 2000; 박래호, 「창계 임영 선생의 생애와 사상」, 『향토문화』 21, 향토문화개발협의회, 2001; 이영호, 「조선후기 주자학적 경학의 변모양상에 대한 일고찰-창계 임영과 식산 이만부의 『大學』 해석과 異端觀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1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1; 이동희, 「우계 성혼의 성리설과 조선후기 '절충파'」, 『동양철학연구』 36, 동양철학연구회, 2004; 임형택, 「퇴계선생어록 해제」, 『퇴계학보』 119, 퇴계학연구원, 2006; 이종범, 「창계 임영의 學問과 政論」, 『한국인물사연구』 9, 한국인물사연구소, 2008; 최재남, 「창계 임영의 삶과 시 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2, 한국한시학회, 2008; 유연석, 「牛溪 후학의 栗谷 성리학 이해와 비판-박세채, 조성기, 임영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23, 율곡연구원, 2011; 이연순, 「창계 임영의 「日錄」에 나타난 독서 기록의 특징」, 『한문학논집』 35, 근역한문학회, 2012.

5) 조정은, 「창계 임영의 개인 수양서로서 『논어』 읽기」,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2019; 함영대, 「창계 임영의 내면적 성찰과 경학」,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2019; 이영호, 「창계 임영의 因文入道論 고찰」, 『민족문화』 56, 한국고전번역원, 2020; 정우봉, 「창계 임영 자료의 문헌적 검토와 산문 창작의 일면」, 『민족문화』 56, 한국고전번역원, 2020; 진재교, 「창계 임영의 한시 연구」, 『민족문화』 56, 한국고전번역원, 2020.

6) 이종범, 앞의 논문에서 政論의 자료로 일부 소차를 활용하기는 했으나 소차 작품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임영은 23세 되던 1671년 庭試에 응시하여 亞元으로 급제했다. 당시 朴世采에게 보낸 서신에서 임영은 “얼마 전 과거에 급제한 일은 참으로 우연히 얻은 것이라 본디 기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기쁘게 해 드리고 과거 공부를 그만둘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7]라고 자신의 마음을 피력하고, 과거 급제 이후에도 학문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가르침을 청했다.

그런데 박세채는 이에 대한 답신에서 과거에 응하여 관직을 얻었으면 常調로 처신해야 한다는 朱熹의 말을 인용하여 임영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8] 뜻밖의 지적을 받은 임영은 자신의 출처에 대해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장문의 답신을 보낸다. 과거에 응시한 것은 부모님의 바람을 이루어 드리려는 마음 때문이었을 뿐,[9] 앞으로도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하는 내용이다.[10]

다만 임영은 “설령 구하지 않았는데 절로 저에게 온다 해도 마땅히 재능과 학식과 시세를 스스로 헤아려서 할 만한 상황이 된 연후에 바야흐로 가서 명을 받을 것이요, 끝내 科場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낮고 가볍게 여겨서 아무렇게나 진퇴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관직을 목적으로 과거에 응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자신의 역량과 시대적 상황이 맞는다면 진출할 수 있다고 밝힌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라에서 실시한 과거의 급제를 단지 절취하여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사사로운 계책으로 삼기만 하는 것은 신하 된 의리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인정하면서, 지금 물러나 자신을 수양하려는 것은 후일 나라에서 부릴 때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11] 요컨대 관직 진출의 뜻을 완전히 닫아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7) 林泳, 『滄溪集』 권6 「答玄江[辛亥]」. 지면 관계상 원문 인용은 생략하고, 작품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예외로 함. 번역은 권헌준 외 10인 공역, 『국역 창계집』 1~8(한국고전번역원, 2015~2019)을 따르되 일부 수정하였다. 이하 같음.

8) 朴世采, 『南溪集』 권31, 「答林德涵[壬子]」.

9) 임영이 1671년 실시된 庭試에 응시한 데에는 실제로 부친의 영향이 컸다. 1669년부터 임영은 부친을 모시고 임지인 함흥에 머물러 있었고, 부친의 권유로 서울을 오가며 別科와 會試, 그리고 庭試에 응시해서 亞元으로 합격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고자 응시했다는 임영의 언급은 관습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10) 林泳, 『滄溪集』 권6, 「答玄江[壬子]」.

11) 같은 글.

다만 이미 과거에 급제했으므로 山林의 處士와 입장이 같을 수는 없었다. 임영에 대한 비판 역시 이 지점에 가해졌다. 그가 출처 문제를 평생 상의했던 박세채도 과거를 거치지 않은 山林이었고, 조정에 머물며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했던 宋時烈 역시 산림이었다. 그들과 입장이 다르면서 지향과 태도는 겹쳤던 것이 출처에 대한 임영의 근본적인 문제였다.

과거 응시 이외에도 임영의 출처에 대한 세간의 평판은 다양했다. 임영이 가장 부담스러워한 것은 더 높은 관직에만 응한다는 혐의였다. 1680년 李世龜에게 "지난번 관례대로 사면하던 때에 淸職과 顯職의 지위가 차례로 점점 더 높아졌기에 오늘 소명을 받들면 또한 낮은 관직을 사양하고 높은 관직을 차지하게 되는 혐의가 있다."[12]는 우려를 표명했다. 숙종에게 올린 소차에서도 "신이 과거에 급제한 뒤 망녕되이 멀리 떠나고자 하여 10년을 종사하지 않다가 경신년에 성상의 은혜가 거듭 더해지고 어버이가 날로 연로해지자 공사 간의 상황에 떠밀려 마침내 顯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후의 행적을 통틀어 살펴보건대 낮은 자리는 사양하고 높은 자리는 받는다는 혐의가 없지 않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이에 대해 스스로 해명할 말이 없다고 하였다.[13]

그 외에 고상한 체 한다는 지적이나[14] 한마디 말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발끈 성을 내는 것이라는 비난[15] 등이 있었고, 붕당을 지으려 한다는 의심까지 받았다.[16] 특히 붕당의 혐의는 평생 극단적 대립을 조정하는 역할에 충실했던 임영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임영은 李師命에게 보낸 서신에서 서인이 득세한 경신환국에 대해서조차 "사람들이 기대했던 일은 크게 위로하지도 못한 채 형의 무리가 공훈으로 봉작되는 혜택을 누리고 우리 무리가 좋은 벼슬을 차지하는 데 지나지 않았을 뿐이니, 이것이 또한 이 백성들의 休戚과 국가의 治亂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17]라고 비판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국가 통치의 본질에서 벗어난 정권 다툼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

12) 林泳,『滄溪集』 권15,「答李壽翁[庚申]」.
13) 林泳,『滄溪集』 권5,「辭黃海監司疏」.
14) 林泳,『滄溪集』 권7,「答玄江[庚申].
15) 林泳,『滄溪集』 권11,「答崔汝和[辛酉]」.
16) 林泳,『滄溪集』 권9,「答李尙書」.
17) 林泳,『滄溪集』 권14,「答李伯吉[師命○庚申]」.

또한 계속 사직을 청하는 와중에 정작 나주에 있던 가족이 서울로 올라온 일도 구설에 올랐다. 1681년 1월 임영의 부친 林一儒는 나이 70으로 通政의 품계에 올라 사은하러 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임일유는 당시 임영이 객지에서 사는 것이 불편할까 염려하여 집안 식구들을 모두 이끌고 서울로 올라왔고, 한동안 임영이 모시고 살았다. 이 점이 실제로는 관직에 오래 있으려는 속내가 있다는 오해를 산 것이다. 이 사실을 언급하며 임영은 낭패하여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18] 주변의 평판도 문제였지만, 관직에 나가기 전 師友들에게 늘 "벼슬하여 훌륭한 일을 하기란 실로 쉽지 않겠지만, 할 수 없다면 벼슬을 그만두는 것은 누구나 힘쓸 수 있다."[19]라고 말하곤 했음에도 자신이 생각보다 오래 관직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李端夏, 崔錫鼎 등은 보다 적극적인 출사를 권했지만 임영은 자신이 감당할 바가 아니라고 답했다.[20] 최석정의 경우 임영이 취하고 있는 진퇴의 양태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임영은 李滉이 奇大升에게 준 出處를 논한 서찰을 인용하며 "아주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거나 나아감은 있고 물러남은 없는 길 외에도 그 사이에 또 머리를 낮추고 걸음을 물리는 한 가지 길이 있음"을 알았으며 자신이 관직에 나간 것은 전적으로 그 원칙에 의한 것이었다고 변론했다.[21] 이른바 '學優仕優'의 일반론에 기댄 논의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저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出과 處의 사이에서 평생 긴장을 놓지 않은 임영의 고뇌가 담겨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이면에는 실제 출사했을 때의 여러 정황이 간단치 않게 얽혀 있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出仕 시기 임영과 숙종의 관계를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2. 出仕의 전말과 귀결

임영은 지속적으로 관직을 제수받았다.[22] 현종 때에도 문과 급제 이듬해인 1672년

---

18) 林泳, 『滄溪集』 권11, 「答崔汝和[辛酉]」.

19) 林泳, 『滄溪集』 권9, 「答李尙書」.

20) 같은 글.

21) 林泳, 『滄溪集』 권11, 「答崔汝和[辛酉]」.

22)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年譜草」, 「辛酉日錄」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1672년(현종13) 윤7월 25일 사변가주서, 1673년 2월 12일 권지부정자, 1674년 2월 29일 부정자, 1679년(숙종5) 11월 9일 비변사 추천으로 6품 승급, 1680년 4월 19일 성균관전적, 4월

윤7월 25일 승문원 事變假注書에 제수되었다가 9월 8일 改差된 바 있고, 1673년과 1674년에도 승문원 副正字 직책을 제수받았다. 다만 임영이 현종대에 관직에 나갔다는 언급은 연보와 문집에 보이지 않는다. 임영이 숙종대의 관찬 사서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숙종 5년인 1679년 비변사에서 올린 薦目에 金錫胄의 추천으로 6품에 올랐다는 기록이다.[23] 현종 때 주어진 가주서는 임시직이었고 부정자는 종9품에 해당하는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승급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숙종은 보통의 예를 따르지 말고 각별히 거두어 쓰라고 명했다.

승급에 이어서 임영에게 제수된 숙종대 첫 관직은 1680년 成均館 典籍이다. 이어서 兵曹 佐郎과 司諫院 正言이 제수되었다. 현전하는 임영의 첫 번째 사직 상소문이 바로 이때 작성되었다. 그 서두이다.

> 삼가 아룁니다. 신이 지난달 28일에 삼가 성상의 有旨를 받아 보니, 신을 사간원 정언으로 삼고 신에게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은 명을 듣고 황송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신은 본디 科擧로 출사한 사

29일 병조좌랑, 5월 18일 정언, 6월 13일 부수찬, 8월 4일 실록개수청낭청, 8월 23일 정언, 8월 24일 부수찬, 윤8월 18일 지평, 윤8월 28일 수찬, 9월 8일 문과정시시관, 9월 10일 지평, 9월 18일 병조정랑, 9월 21일 수찬, 9월 24일 교리, 1681년 1월 7일 지평, 1월 27일 교리, 2월 6일 지평, 2월 9일 교리, 3월 12일 서학교수, 5월 9일 헌납, 5월 14일 교리, 7월 24일 부교리, 전라좌도경시관, 9월 14일 헌납, 9월 24일 교리, 10월 16일 이조좌랑, 1682년 2월 16일 부사과, 4월 9일 겸 교서교리, 4월 28일 수찬, 5월 2일 독서당초계, 5월 13일 이조좌랑, 6월 16일 부사과, 6월 21일 수찬, 7월 17일 헌납, 7월 22일 이조좌랑, 7월 29일 측후관, 8월 4일 이조정랑, 11월 2일 수찬, 11월 7일 부사과, 12월 22일 부사직, 12월 26일 부교리, 1683년 1월 11일 이조정랑, 1686년 3월 17일 이조정랑, 4월 5일 검상, 4월 10일 사인, 4월 22일 헌납, 4월 27일 집의, 윤4월 10일 동학교수, 9월 14일 사간, 9월 20일 부호군, 10월 5일 사복정, 110월 8일 사간, 10월 17일 승지, 11월 9일 부호군, 1687년 3월 14일 예조참의, 3월 25일 부제학, 10월 14일 대사성, 5월 13일 부호군, 10월 14일 대사성, 10월 17일 황해감사, 1688년 5월 25일 대사성, 7월 13일 이조참의, 9월 26일 전라도관찰사, 1689년 7월 21일 성주목사, 1694년 4월 3일 공조참판, 4월 17일 대사성, 5월 14일 승문제조, 윤5월 27일 대사헌, 9월 13일 대사간, 10월 20일 개성유수, 7월 8일 부제학.

23) 「年譜草」에는 1676년(숙종 2) 가을에 6품으로 올라 典籍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고 했고 "연전에 추천 명단에 들었으나 지금에 와서 비로소 6품으로 오른 것이다."라는 간주까지 달려 있으나 이는 오류로 보인다. 『숙종실록』 및 『승정원일기』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영 본인이 1680년에 올린 「辭校理疏」에 "지난해 겨울 6품에 제수되는 은명을 입었다."는 언급이 보인다.

람이라 山野에서 자중자애하는 선비와는 이미 처지가 다를 뿐 아니라, 분에 넘치게도 다행히 밝고 성대한 시절을 만나 聖主께서 거두어 불러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명을 받으면 응당 즉시 행해야지 어찌 쉽사리 사양하고 피하는 기색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24]

출사할 수 없는 이유를 피력하기 위해 작성한 상소문에서 임영은 자신이 사직을 쉽게 입에 올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한다. 전술한 것처럼 이른바 山林이 아니라 이미 과거로 출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임영이 유지를 받은 것은 5월 28일이었고 이 상소가 조정에 진달된 것은 6월 12일이었는데, 당시 숙종은 "경의 문학은 내가 이미 들어서 안다. 지나치게 사양하지 말고 속히 올라와서 직임을 보라."는 비답을 내리고[25] 이튿날 다시 副修撰에 제수했다.

당시 나주 회진에 있던 임영은 縣과 道를 통해 연이어 소장을 올리는 것도 적절치 않은 사정이라서 일단 召命에 응해 도성 밖까지 올라갔다.[26] 사양하면 할수록 더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직접 대면해서 조정의 君臣에게 자신의 실상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성 밖에 당도해서 다시 올린 사직 상소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성심을 다해 奉職한 뒤 군신 간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떠날 수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었다.[27]

도성에 올라와서 올린 7월 7일 사직 상소에도 역시 같은 비답이 내려왔다. 결국 임영은 7월 9일에 肅拜했고, 이어서 召對에 따라 經筵에까지 入侍하게 되었다. 그때의 상황과 심정을 임영은 박세채에게 보낸 서신에서 상세하게 서술했다.

본래는 면전에서 사직을 청하려고 하였는데, 듣건대 조정의 사체는 大臣만이 탑전에서 사직을 청할 수 있고, 六卿 이하는 분의로 볼 때 감히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상례로 조용된 관리인 저로서는 조정의 예를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강설하는 기회에 오활한 저의 견해를 전부 말씀드린다면 성상께서 제가 애당초 출세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살

24) 林泳,『滄溪集』 권3,「辭正言疏」.
25)『승정원일기』 숙종 6년 6월 12일.
26) 林泳,『滄溪集』 권7,「答玄江[庚申]2」.
27) 林泳,『滄溪集』 권15,「答李壽翁[世龜○庚申].

피셔서 사직할 계획을 쉽게 이룰 수 있을 듯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처음 君父를 알현하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저는 절로 감격하여 이에 안배할 필요도 없이 제 마음을 모두 토로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28]

임영이 경연에 입시했을 때의 정황은 『숙종실록』과 문집의 「經筵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번 왕을 만나 자신의 부족한 실상을 보여드린 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임영의 바람과는 달리 그의 첫 입시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무엇보다 숙종의 칭찬이 지대했다. 임영은 이어진 비답과 경연에서의 칭찬에 감격하며 일말의 기대를 품게 된다.

그 기대를 가능하게 한 것은 숙종의 태도였다. 첫 입시 뒤에 임영은 "유생이 함부로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시는 뜻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점은 성상의 덕이 前代의 왕보다 특출한 것이니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움을 형언하기 어렵습니다."[29]라는 인상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임영은 본인의 애초 의도와 다른 상황이 되긴 했지만 이를 기회 삼아서 평소에 생각해 온 경세의 사업을 조금이라도 실현할 수 있다면 진퇴로 인한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다만 관건은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어 실제로 시행되는지 여부였다. 2, 3개월이라는 기한을 정해 두고 관직에 있으면서 숙종의 마음을 살피겠다는 것이다.[30] 이것이 임영이 出仕하게 된 이유였다.

그러나 경연에서의 인정과 달리 현안에 대한 건의에서 숙종은 임영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인다. 기록에 보이는 첫 번째 사례는 1680년 11월 22일 임영이 홍문관 교리로서 부수찬 宋光淵과 함께 올린 차자[31]에 대해 숙종이 엄하게 꾸짖는 비답을 내린 일이다. 이 차자는 鄭載嵩이 부친 鄭太和의 禮論을 변호하는 상소를 올린 일에 대해서 11월 19일 李宏이 정재숭을 탄핵하고 자신도 체직해 달라고 청하자 숙종이 격분하여 이굉을 노골적으로 꾸짖고 청한 대로 체직해 버린 일을 배경으로 한다. 임영은 이굉이 옳고 정재숭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입론을 펼쳤고, 이에 대해 숙종이 다시 격노하였다.[32] 임영은 이튿날 바로 동료들과 함께 대죄하는

28) 林泳, 『滄溪集』 권7, 「答玄江庚申」2」.
29) 같은 글.
30) 같은 글.
31) 林泳, 『滄溪集』 권3, 「玉堂論事箚」.
32) 『숙종실록』 6년 11월 19일; 22일.

소[33]를 올렸다. 이어서 올린 사직 상소에서 임영은 엄한 비답으로 인해 대죄하는 한편 숙종이 선입견을 내세워 공론을 막는 데 힘쓰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34] 이후에도 1681년 3월 國舅 閔維重의 유임이 부당하다는 상소[35]를 올렸다가 엄한 비답을 받고 체차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소차에 대한 연이은 엄한 비답에도 불구하고 임영에 대한 제수는 계속 이어졌다.

숙종에 대한 임영의 기대가 크게 꺾인 것은 1681년 5월 3일 올린 소차에 대한 숙종의 반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영은 교리로서 홍문관의 여러 신하들과 함께 올린 차자에서 國舅인 金萬基가 병조 판서를, 外戚인 金錫胄가 이조 판서를 맡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숙종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비답을 내렸지만 유독 김만기와 김석주를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실로 괴이하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5월 12일 임영 등이 망언한 죄를 받고자 상소하자 숙종은 다시 "부박한 무리가 침공하는 데에만 급급하니 한 번 웃을 거리도 못 된다"라고 답했다. 승정원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을 거두어달라고 청했지만 숙종은 "부박하다는 표현은 본래 연소한 무리를 가리켜 으레 하는 말이니 문제될 것 없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답으로 일관했다.[36]

이후 임영의 사직 상소에는 자신이 올린 의견이 대부분 시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사직의 이유로 들곤 했다. 임영이 숙종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결정적인 계기는 1682년 8월 求言에 응하여 자신의 정견을 종합하여 올린 萬言疏에 대한 숙종의 비답과 조처였다.

> 소장에 대한 비답을 삼가 보건대 성상의 정성스럽고 간절한 뜻이 이전만 크게 못하여 사람을 실망시키니,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성상께서 큰일을 처리하는 즈음에 우연히 照管을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치에 어두운 저의 말이 도리어 좋은 기회를 망친 듯합니다. 조관을 잘못하셨다는 앞의 말은 감히 바라는 바가 아니고, 후자에 해당한다면 저의 죄는 죽음으로도 스스로 속죄할 수 없으니, 어이하겠습니까, 어이하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본래 성

33) 林泳, 『滄溪集』 권3, 「承嚴批後同僚員待罪疏」.
34) 林泳, 『滄溪集』 권3, 「辭校理疏」.
35) 林泳, 『滄溪集』 권3, 「引疾乞免兼請勿令國舅仍帶兵判疏」.
36) 『숙종실록』 7년 5월 3일; 5월 12일.

> 상께서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는 뜻이 불과 이 정도일 뿐이라면 어찌 끝내 큰일을 이룰 수 있다고 감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스스로 천장을 바라보며 탄식만 할 뿐입니다.[37]

만언소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위의 토로를 통해 숙종에 대한 임영의 기대가 얼마나 크게 꺾였는지 알 수 있다. 이후에 올린 사직 상소에서는 일체의 論事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가장 공을 들인 상소를 올린 뒤 임영은 상소를 통해 자신의 경세 의견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1694년 갑술환국 이후 다시 한번 시도해 볼 기회가 올 수도 있었으나 박세채가 밀려나는 상황에서 다시 좌절해야 했고, 박세채의 죽음에 이어서 본인이 48세에 생을 마감함으로써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Ⅲ. 疏箚 인식과 작품 개관

1. 임영의 소차 인식과 작문 태도

어려서부터 文才가 뛰어났고 博覽强記로 이름났던 임영은 일찍부터 詩와 騈儷文에 두각을 나타냈다. 16세 때 『文選』을 배워 賻, 表, 策을 능수능란하게 짓게 되었고 17세에 李端相의 문하에 가면서 文名이 널리 알려졌다. 18세 때 생원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이후로는 문장보다 학문에 전념하기 시작했지만, 임영이 경연에서 숙종을 처음 대면하여 강독과 논의를 마친 뒤 승지가 언급한 첫 마디도 “임영은 글 쓰는 재능이 있다.”는 평판이었다.[38]

이처럼 탁월한 문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임영은 일찍부터 疏箚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다음은 1666년 18세에 기록한 「日錄」의 일부이다.

---

37) 林泳, 『滄溪集』 권7, 「答玄江[壬戌]4」.

38) 같은 글.

며칠 전에 나타났던 雷霆의 변고에 관해서 논한 一公二卿의 疏箚를 살펴보건대 그 말은 진부한 것을 주워 모은 것으로, 애당초 하나씩 폐단을 말하고 하나씩 대책을 건의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제대로 시행할 데가 없게 한 것이 儒生이 과거에 응시하여 짓는 글과 다름이 없었으니,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다. 책상 위에 澤堂이 쓴 글이 있기에 그중 疏箚編을 뽑아서 살펴보니, 말한 내용에 시행할 만한 것이 많아서 단지 문장이 정밀하고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었지만 그의 주장과 견해는 종종 功利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 이런 경륜 있는 분도 이와 같을진댄, 세간의 허다한 식견 없는 사람들이야 어떠하겠는가. 마침내 물러 나와 「王道解」를 지어 소차의 그릇된 점을 밝혔다.[39]

임영이 지목한 一公二卿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고,[40] 「王道解」가 남아있지 않아서 임영의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다만 위의 서술을 통해 볼 때 다음의 몇 가지 방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진부한 말을 주워 모아서 쓰지 말 것, 폐단과 대책을 우선순위 없이 열거하지 말 것, 시행할 만한 내용이 많을 것, 功利를 추구하는 데에 빠지지 말 것, 그리고 정밀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구사할 것 등이다.

임영은 1685년 관직에 나간 申琓에게 보낸 서신에서, 세무와 시사를 익히고 『陸宣公奏議』, 『自警編』, 『宋名臣錄』 등의 책 및 우리나라의 栗谷 선생의 글을 반드시 숙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41] 이는 바로 임영이 경세의 지식을 얻고 상소문의 전범으로 삼았던 글들이기도 했다.

나아가 임영은 상소문의 내용과 표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박세채와 수시로 상대가 쓴 글을 검토하곤 했다.

---

39) 林泳, 『滄溪集』 권25, 「日錄・丙午」, "觀一公二卿疏箚論日昨雷霆之變, 其言掇拾陳腐, 初未嘗道一弊建一策, 使人主有着實下手處, 與儒生赴擧文字亡異, 可慨之甚也. 案上有澤堂稿, 乃抽其疏箚編以觀, 所言多底可行, 不寧文辭之精麗而已. 顧其論議見解, 往往落在功利臼窠, 此老猶如是, 況世間多少面墻底人耶? 遂退而作王道解, 以明其不然."

40) 1666년 11월 1일 밤에 우레와 번개가 크게 치는 변고가 있었고, 그 이튿날 호조 판서 김수흥과 대사헌 김수항 등이 箚子를 올린 사실이 『현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었다. 이때 올린 김수항의 차자가 문집에 실려 전한다. (金壽恒, 『文谷集』 권10, 「因冬雷之變 請加修省箚」) 같은 해 겨울 우레의 변고에 대한 기록으로는 12월 11일 대사헌 이상진이 상소를 올린 일이 『현종실록』 7년 12월 11일조에 보인다.

41) 林泳, 『滄溪集』 권11, 「答申公獻」.

> 소장의 초본을 보내 올립니다. 바빠서 깨끗이 베껴 쓰지 못하였으니,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읽어 보신 뒤에 잘못되거나 망녕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전의 소장도 베껴 써서 올리려고 하였지만 바빠서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요컨대 제 생각대로 곧장 쓰고 시속의 법규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전 소장에서 한 말에 대해 고상한 체한다는 비난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를 미루어 생각해 보면, 뒤에 올릴 소장도 이런 비난을 초래할 곳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42]

임영은 만언소를 올린 뒤의 급박한 상황에도 박세채에게 소차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당시 숙종은 임영의 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궁중에 두고 관계 기관에 내려보내지 않았는데, 소장이 留中되어 다른 사람에게 유출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도 박세채에게는 은밀하게 보내서 질정을 구한 것이다.[43] 또한 임영 자신이 박세채의 상소문을 보고 논평을 보내기도 했다. 임영은 1688년 박세채가 올린 소차에 대한 숙종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 대해 아쉬워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44] 그러면서 소차의 논지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을 격렬하고 엄하게 논박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견지하면서 잘 타일러서 적절히 調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45] 다음은 박세채가 1694년에 올린 계차[46]에 대한 논평이다.

> 문하께서 올린 啓箚 4本을 삼가 보니, 모두 시대에 절실하고 중요한 도리였습니다. 공평하고 적합하며 자세하고 곡진하니 지금 사람이 말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前賢들도 미처 말하지 못했던 것이 많으니, 저의 마음에 위안이 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떠합니까? 중요한 도리를 먼저 말하지 않고 범범하게 원대한 계획을 언급하셨다면 필시 절실하지 않을 염려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 이미 이것을 갖추었습니다. 깊이 연구하고 널리 물어서 한 개의 규모

42) 林泳, 『滄溪集』 권7, 「答玄江[庚申]」.
43) 같은 글.
44) 林泳, 『滄溪集』 권8, 「答玄江別紙[戊辰]」.
45) 같은 글.
46) 朴世采, 『南溪集』 속집 권3, 「進別單啓箚四本箚」. 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숙종실록』 20년(1694) 6월 4일 기사에도 보인다.

를 확정하여 군신 상하로 하여금 지키며 따를 바를 알게 하는 것은 생각건대 역시 다음에 할 일입니다.[47]

원대한 계획을 범범하게 말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도리를 먼저 짚음으로써 절실하게 읽힐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대목에서, 소차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이 소차에서 박세채가 이전에 올린 만언소를 스스로 다시 언급한 데 대해서는 "비록 구비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그 사이에 시행할 것과 버릴 것, 천천히 시행해야 할 것과 빨리 시행해야 할 것들은 다시 자세하게 상고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를 정하지 않고 그냥 만언소 전체를 들어서 언급했기 때문에 실효가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48]

임영은 문장에 대한 재능과 관심을 일찌감치 각고의 학문 연마로 돌렸다. 하지만 문장을 위한 문장이 아니라 경세의 실현을 위한 문장인 소차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보였고 지대한 공력을 쏟았다. 어려서부터 이름날 정도로 탁월했던 임영의 문학적 재능이 가장 지속적으로 순도 높게 발휘된 문체가 소차라고 할 수 있다.

2. 辭職과 論事: 임영 소차의 실제와 내용

문집과 『숙종실록』, 『승정원일기』를 종합하여 파악한 임영의 소차 작품은 다음과 같다.

〈표 1〉 임영의 소차 작품 목록

연번	제목	관련 기록	비고
1	辭正言疏	1680년 5월 19일 제수, 6월 12일 비답. (승정원일기)	5월 29일 受旨
2	辭副修撰疏	1680년 6월 13일 제수, 7월 7일 비답, 숙배, 9일 소대. (승정원일기)	

47) 林泳, 『滄溪集』 권8, 「答玄江[甲戌]3」.

48) 林泳, 『滄溪集』 권8, 「上玄江[甲戌]」.

3	玉堂請勿退視事之期箚		
4	引疾乞退仍論聖學疏		
5	玉堂請廣言路箚		
6	玉堂請勿以鞫獄停講箚		
7	玉堂應旨進言疏		
8	玉堂論服制箚	1680년 10월 30일 상소. (숙종실록)	
9	玉堂論喪次群臣成服箚	1680년 10월 30일 상소. (숙종실록)	
10	請告廟文中勿添入追錄一事疏		
11	玉堂論服制箚		
12	玉堂論事箚	1680년 11월 22일 상소, 비답. (승정원일기/숙종실록)	
13	承嚴批後同僚員待罪疏	1680년 11월 23일 상소, 비답. (승정원일기)	
14	辭校理疏		
미수록	校理林泳在鄕上疏以星變陳戒	1681년 1월 1일 정치의 대요와 궁궐 · 관청의 비용을 줄이기를 청한 상소 (승정원일기)	
15	乞歸養疏	1681년 3월 28일 상소, 비답. (승정원일기)	
16	辭校理疏		
17	辭校理疏		
18	請勿親出迎勅疏	1681년 4월 2일 상소, 비답. (승정원일기/숙종실록)	
19	引疾乞免兼請勿令國舅仍帶兵判疏	1681년 3월 26일~4월 1일 관련 기사 (숙종실록)	國舅 민유중 유임 문제
20	辭校理疏		
미수록	應旨上箚七條	1681년 5월 3일 국구와 외척의 서용 문제 언급하고 엄한 비답 받음 (승정원일기/숙종실록)	
21	辭副校理疏	1681년 7월 24일 제수, 27일 상소, 비답. (승정원일기)	
22	辭校理兼論文廟陞黜疏	1682년 봄	

23	論戶布疏	1682년 (연보)	
24	辭校理疏	1682년 7월 5일 상소, 비답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에는 “修撰林泳疏曰”로 되어 있음.
25	辭校理疏		
26	應旨言事疏	1682년 8월 14일 상소, 비답 (승정원일기/숙종실록)	萬言疏
27	辭同副承旨疏	1686년 10월 제수. (승정원일기)	
28	辭副提學再疏	1687년 5월 (승정원일기)	
29	辭黃海監司疏	1687년 10월 17일 제수, 25일 奉旨, 11월 9일 상소, 비답. (승정원일기/숙종실록) 12월 17일 다시 상소.	승정원일기, 실록에 인용된 상소문과 다름
30	辭大司成疏	1688년 5월 25일 제수, 28일 비답. (승정원일기)	
31	再疏		
미수록	辭全羅監司疏	1688년 9월 28일 직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罷職을 청하는 상소 (승정원일기)	
32	辭大司憲疏	1694년 윤5월 27일 제수, 8월 5일 상소, 비답 (승정원일기, 불일치)	
미수록	辭大司憲疏	1694년 8월 5일 질병을 이유로 憲職의 遞職을 청하는 상소 (승정원일기)	
33	辭副提學疏	1695년 가을 (연보)	
34	乞還收留住京臥藥物賜給之命疏	1695년 10월 13일 약물 특사 윤허 (숙종실록보궐정오)	
35	請故持平朴光玉・忠勇將金德齡贈諡疏[代述]		
36	請羅州五賢書院竝享牛・栗兩賢疏[代述]		
37	咸興六賢書院請額疏[代述]		
38	館學儒生伸救朴玄石疏[代述]	1688년 7월 13일 박세채의 封箚로 인한 숙종의 격분. (승정원일기, 숙종실록)	
39	擬進言藁[庚午所錄]	1690년	

『숙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인용되거나 중요하게 언급된 사직 상소 가운데 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문집 편차 과정에서 모든 소차가 망라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발문을 쓴 林淨은 “소차도 亂藁에서 모은 것이고 세월이 이미 오래 되어서 실제로 올렸던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모두 수록했다.”[49]라고 했다. 문집에 실린 소차들이 임영 본인이 그때그때 정리해 놓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임영 소차의 내용은 크게 辭職과 論事의 두 주제로 나뉜다. 임영은 첫 번째 올린 사직 상소에서 이미 본인이 사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

> 다만 신이 생각하기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주가 부족한 것이요, 둘째는 학문이 완성되지 못한 것이요, 셋째는 명성이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요, 넷째는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50]

이어지는 내용은 이 네 가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문장으로 이름났지만 이미 그만두었고 학문에 종사하려 마음먹긴 했지만 아직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 헛된 명성이 나게 되었다. 더구나 諫官의 직책은 갑자기 승급하여 時務에 통달하지 못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신이 처음 과거에 급제했을 때 즉시 스스로를 헤아려 보지 않고 뭇사람을 따라 출사했다면 오히려 괜찮았겠지만, 이미 헛된 명성으로 외람되이 陞品된 뒤에는 더욱이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51]라고 하여 중대한 직책을 맡을 수 없는 사정을 피력했다.

이후 홍문관에 있으면서 올린 소차들은 주로 服制 문제, 國舅와 外戚의 서용 문제, 言路를 넓혀야 하고 經筵을 지속해야 한다는 진언 등이 주를 이룬다. 이들을 제외하고 임영이 단독으로 올린 소차 가운데 사직이 아닌 논사를 표방한 것은 淸 사신을 왕이 직접 나가서 맞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편 「請勿親出迎勅疏」과 호포법을 시행하는 것이 야기하는 문제를 논한 「論戶布疏」, 그리고 災異로 인한 구언 유지에 응하여 올린 「應旨言事疏」의 세 편이다.

---

49) 林泳, 『滄溪集』, 「滄溪集跋(林淨)」.

50) 林泳, 『滄溪集』 권3, 「辭正言疏」.

51) 같은 글.

임영은 숙종에게 특정한 사안에 대한 견해를 진달할 때 왕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정황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바로 그 문제를 언급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임영이 숙종을 처음 만난 1680년 7월 7일 경연에서의 장면이다.

임영이 처음부터 論事를 할 생각은 아니었다. 『資治通鑑綱目』을 강독한 뒤 함께 입시한 吳道一이 공주의 집을 수선하는 것이 지나치게 사치스러우니 줄여서 검소하게 해야 한다고 아뢰었는데 숙종은 말을 돌리며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본 임영이 백성의 稅를 경감해주기 위해서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는 권면을 했다. 이에 대해 숙종이 "추수의 상황을 보아서 변통하게 할 것이다."라고 답했지만, 경감은 추수 뒤에 하더라도 절약은 당장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숙종이 "대신들과 의논하여 변통하겠다."고 답했는데, 임영은 그만두지 않고 다시 말했다.

> 예로부터 신하가 進言할 때에 학문의 방법에 대해 범범하게 진달하면 군주가 메아리처럼 호응하다가 조정의 실제 일을 언급하면 흔쾌히 따른 경우가 드물었으니, 이것이 예로부터 있었던 근심거리였습니다. 지금 신이 학문을 논한 말은 다행히 받아들이셨으나, 오도일이 아뢴 공주의 집에 관한 일과 신이 아뢴 크게 절약해야 한다는 말은 모두 조정의 실제 일인데 성상께서 끝내 흔쾌히 받아들일 뜻이 없으시니 성상께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52]

이에 숙종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 대화를 나눈 뒤 임영은 박세채에게 "유생이 함부로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시는 뜻이 조금도 없었다."라고 숙종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지만,[53] 이날 임영을 처음 만난 숙종에게는 자신의 긍정적인 대답에도 불구하고 재차 삼차 다시 아뢰는 임영의 인상이 집요하게 느껴졌을 법하다.

임영은 표면상 사직을 청하는 소차에서 논사를 겸하여 아뢰기도 했다. 1681년 3월 말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引疾乞免兼請勿令國舅仍帶兵判疏」에서는 國舅 閔維重의 유임 문제를 거론하였고, 1682년 봄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辭校理兼論文廟陞黜疏」에서는 文廟에 선현을 모시는 문제에 대해 논했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1682

52) 林泳, 『滄溪集』 권18, 「經筵錄」.

53) 林泳, 『滄溪集』 권7, 「答玄江[庚申]2」.

년 8월 14일 만언소를 올린 뒤로는 더 이상 사직 상소에서도 논사를 겸한 사례가 없다. 모두 본인의 무능력이 이미 시험에 의해 드러났다는 언급과 질병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한편으로 임영이 만언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論事의 정수를 다 쏟아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Ⅳ. 求言에 응한 萬言疏 분석

1682년 8월 3일, 재위 8년차의 숙종은 연이은 天災가 자신의 허물로 인한 것임을 천명하고 널리 直言을 구했다.[54] 災異와 人事의 관련에 대한 언급은 儒家 最古의 경전들인 『詩經』과 『書經』에서도 찾을 수 있다. 災異를 人事의 잘못에 대한 하늘의 경고로 보는 관점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漢代 학술을 주도한 董仲舒였다.[55] 재이가 발생하면 왕이 '자신의 부덕을 반성해야 함[遇災修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구도로 이해되어 왔다.[56] 왕이 자신의 부덕을 반성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求言이었다. 구언이란 왕이 정치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묻고 시정하고자 교지를 내려 조정과 재야의 상소를 받는 제도이다.[57] 관료 지식인들이 왕의 통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론적 방편으로서 災異 관련 求言과 그에 응하는 上疏가 지니는 정치적 기능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58]

숙종의 구언 역시 이러한 전통과 관습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강한 바람과 극심한 가뭄의 재앙이 겹쳤는데, 숙종이 주강에서 이를 임진년과 병자년 병란의 징조와 연결하여 강화도와 남한산성의 군량미를 걱정하는 언급을 할 정도였다.[59] 숙종의 구언에

54) 『숙종실록』 8년 8월 3일.

55) 董仲舒, 『春秋繁露』 권8.

56) 허남진 · 박성규, 「신유학의 현실문제 인식－격물론, 귀신론, 재이론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45,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1; 이동린, 「許穆의 春秋災異論에 나타난 漢學的 경향」, 『한국사론』 49,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3.

57) 이석규, 「朝鮮初期의 求言」, 『한국사상사학』 15, 한국사상사학회, 2000; 「朝鮮初期 應旨上疏에 나타난 制度論」, 『조선시대사학보』 39, 조선시대사학회, 2006; 「연산군 · 중종대 求言의 성격 변화와 그 의미」, 『사학연구』 88, 한국사학회, 2007.

58) 송혁기, 「災異 관련 應旨上疏文의 관습과 수사」, 『동아시아고대학』 33,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응하여 8월 9일 金壽興, 10일 朴世采, 12일 吳道一과 金萬吉, 19일 李翔 등이 소차를 올렸다.[60] 당시 이조 정랑의 직함에 있던 임영은 8월 14일 12,081자에 달하는 「應旨言事疏」를 올렸다.

이 상소문은 임영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經世에 대한 견해를 총집결하여 써 내려간 작품이다. 분량은 방대하지만 매우 명확한 논지로 단락을 구성해서 일목요연한 구성을 보여준다. 임영은 박세채에게 보낸 서신에서 만언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언급했다. 단락별 주제를 명확하게 세우고 작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畏敬과 儉約을 근본으로 삼고 당대의 심한 병폐를 먼저 제거하는 것으로 그 다음을 삼았습니다. 여기서 말한 당대의 심한 병폐라는 것은, 첫째 聖心의 치우침이 아직 제거되지 못한 점이고, 둘째 조정의 명령에 신뢰가 없다는 점입니다. 內需司와 近習, 勳戚에 관한 내용은 모두 성상의 치우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재의 병폐를 먼저 제거한 뒤라야 治規를 정하여 힘써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大進聖學, 大肅朝綱, 大得民心, 大修軍政을 4가지 주제로 삼았습니다. 조정의 기강에 대해 논한 부분은 또 4개의 작은 절목을 두었으니, 첫째는 責勉大臣이고, 둘째는 選任官長이며, 셋째는 庶官勤仕之規를 확립하는 것이고, 넷째는 胥吏弄權之弊를 혁파하는 것입니다.[61]

만언소는 집필 이유를 밝히고 왕의 구언을 칭송하는 서두에서 시작하여, 국세가 얼마나 위급한지를 경고하고 나서 敬畏와 儉約을 根本要務로 제시했다. 이어서 2가지 病弊와 4가지 治規를 綱目으로 설정하고 각각 세부적인 項目들을 위계에 따라 논리적으로 구성했다. 단락별 요지를 더 세분해 볼수록 이 작품이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구성의 묘미를 보이기 위해 번다함을 무릅쓰고 전편의 단락별 요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서두

1-1 집필 이유 : 청요직에 있으면서 구언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음.

---

59) 『숙종실록』 8년 8월 9일.

60) 『승정원일기』 숙종 8년 8월 9일; 10일; 12일, 『숙종실록』 8년 8월 19일.

61) 林泳, 『滄溪集』 권7, 「答玄江[壬戌]4」.

1-2 왕의 求言 칭송
1-2-(1) 國家危亂에도 두려움 모르는 세태 우려 (2) 왕이 罪己求言하니 크게 다행
2 國勢의 危急함에 대한 警懼 강조
2-1 왕의 警懼가 未盡함 지적
2-2 警懼가 未盡함을 아는 근거
2-2-(1) 進宴의 거행 (2) 正殿 修改 진행 (3) 잔치와 건설을 중지해야 함
2-3 國勢의 危急을 몰라서 警懼가 未盡한 것
2-3-(1) 警懼가 未盡하면 危急한 國勢를 구할 수 없음 (2) 國勢의 危急은 겉으로 알기 어려움 (3) 警懼가 未盡한 이유는 國勢의 危急을 모르기 때문
2-4 時勢를 통해 患亂 경고
2-4-(1) 立國이 오래되어 憂患 올 수 있음 (2) 역사의 事勢로 볼 때 外侵 가능성 있음 (3) 天災物怪로 인한 亂의 가능성 있음 (4) 현재 국가 역량으로 환난 감당 못함 경고 (5) (小結) 國勢의 危急함에 대한 각별한 警懼가 필요함
3 금일의 根本要務 : 敬畏와 儉約
3-1 敬畏하고 儉約해야 天命 얻을 수 있음
3-2 至誠敬畏 : 인심과 만사, 국가의 흥망이 敬畏에 달림
3-3 刻苦儉約
3-3-(1) 進宴과 正殿 修改 중지하고 10년 기한으로 경비 절반 감액 (2) 慈聖과 列聖께 비용 절감 고함 (3) 儉約의 기대효과
3-4 (小結) 畏敬와 儉約은 今日의 本根要務
4 당대의 병폐 : 聖心偏私之未祛와 朝廷命令之無信
4-1 聖心偏私之未祛
4-1-(1) 無私財와 無私人
4-1-(2) 無私財 (ㄱ) 內需司 창설의 문제 (ㄴ) 內需司가 백성과 이익 다툼 (ㄷ) 內需司에 관여치 말고 백성에게 은택 내릴 것 (ㄹ) 內需司를 환관이 아닌 사대부가 관리하도록 개정
4-1-(3) 無私人 (ㄱ) 환관의 득세는 망국의 징조 (ㄴ) 환국에 환관이 관여한 정황 (ㄷ) 환관을 엄단하지 못함 지적 (ㄹ) 정사에 환관 배제할 것 (ㅁ) 공훈 있는 척신도 경계할 것 (ㅂ) 공신을 과도하게 대우하지 말 것
4-1-(4) (小結) 왕의 마음에서 私財와 私人 제거
4-2 朝廷命令之無信
4-2-(1) 朝廷命令之無信 사례 (ㄱ) 逃故 조사에 친족 추가하여 毒民 가중 (ㄴ) 逃故 부세 탕척 번복으로 害仁 심화 (ㄷ) 兒弱 기준 연령 낮춤으로써 聚斂附益 (ㄹ) 軍布

升尺 줄였다가 늘려서 疎略顚倒
④-2-⑵ 신의가 없으면 민심 잃고 국가 존립 위태
④-2-⑶ 해결 방안: 잘못 인정, 逃故 탕감, 兒弱 연령 원복, 軍布 匹數 삭감
⑤ 治規의 定法 : 大進聖學, 大肅朝綱, 大得民心, 大修軍政
⑤-1 병폐 제거를 넘어서 治規의 定法 4가지 제시
⑤-2 大進聖學
⑤-2-⑴ 君德을 위한 학문 진전 방도 : 立志, 致知, 力行
⑤-2-⑵ 立志 ㈀ 立志의 정의와 일반 원칙 ㈁ 경연 때 왕이 언급한 慕效之意 칭찬 ㈂ 왕이 생각만 있고 힘써 구하는 정성이 없으니 立志 부족
⑤-2-⑶ 致知와 力行 중 力行을 먼저 말하는 이유
⑤-2-⑷ 力行 ㈀ 力行의 정의와 克己, 居敬 ㈁ 왕이 견고한 기상 부족하다며 嗜好 경계하고 克己 강조 ㈂ 왕이 할 수 있는 居敬의 방법 제시
⑤-2-⑸ 致知 ㈀ 致知의 정의와 효용 ㈁ 왕은 지혜가 넉넉하지만 끝까지 궁구하지 않고 판단 흐릴 때 있음 ㈂ 왕이 나날이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면 모든 정사에 막힘이 없을 것
⑤-2-⑹ (小結) 모든 변화의 근본이 학문에 달려 있음
⑤-3 大肅朝綱
⑤-3-⑴ 大肅朝綱의 정의와 4가지 조목
⑤-3-⑵ 責勉大臣 ㈀ 大臣의 바람직한 역할 ㈁ 지금 大臣들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 ㈂ 大臣들이 君德 위한 직언 올리도록 책면 ㈃ 大臣들이 관료 관리와 백성 구제, 변경 방어에 전념하도록 책면 ㈄ 전직 대신에게 역할 부여
⑤-3-⑶ 選任官長 ㈀ 주요 보직에 적임자가 오래 근무하도록 제도 개선 ㈁ 변방 안찰 관직 재량에 맡기고 근속시킬 것 ㈂ 오래 근무하기 어려운 兩司의 경우도 체직 신중히 할 것
⑤-3-⑷ 立庶官勤仕之規 ㈀ 복무 규정 수립의 필요성 ㈁ 업무 파악 제대로 해서 下吏에게 맡기지 말 것 ㈂ 출근과 휴가 규정 엄정하게 적용
⑤-3-⑸ 革吏胥弄權之弊 ㈀ 서리의 권력 농단 막기 위한 방도 세 가지 ㈁ 서리 정원 준수하여 감원 ㈂ 서리 순환 보직 시행 ㈃ 官物 點退 과정의 수뢰 행위 근절
⑤-3-⑹ (小結) 大肅朝綱의 4가지 조목을 반드시 유념하여 시행
⑤-4 大得民心
⑤-4-⑴ 大得民心의 정의
⑤-4-⑵ 民心을 잃은 현실

5-4-(3) 大得民心의 방법 : 薄稅斂 (ㄱ) 身役: 逃故 탕척, 兒弱 연령 원복, 布疋 삭감 (ㄴ) 大同稅 삭감 (ㄷ) 給災 현실화
5-4-(3) 大得民心의 방법 : 軍政 정비, 경비 절손 병행해야 실효 얻을 수 있음
5-5 大釐軍政
5-5-(1) 大釐軍政의 정의
5-5-(2) 大釐軍政의 방법 (ㄱ) 徒食하는 병졸 감축 (ㄴ) 숙위 병졸 많으면 군량 부족 (ㄷ) 인원 줄이고 정예로 조련 (ㄹ) 도성 병사 감축 (ㅁ) 외방 무관 발탁 제도 개선 (ㅂ) 수군 제도 개선으로 해상 방비 강화 (ㅅ) 장수 자질 갖춘 인물 선임 (ㅇ) 지형 활용한 방비 태세 정비
5-6 (小結) 부족한 治規 定法이지만 정성 다했으니 채택 부탁
6 결어
6-1 國勢의 危急함을 至誠敬畏하여 刻苦의 노력으로 다스림의 정법 구현
6-2 遺賢 초치 필요
6-3 분량은 길고 부족하지만 愛君憂國의 진정으로 썼음
6-4 상소 작성 중 進宴 일시 중지 소식 들었는데 아예 정지할 것 권고
6-5 마무리

위의 단락 개요에서 볼 수 있듯이 임영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단락별로 그 구성을 알 수 있는 주제어를 미리 제시하고 끝나는 지점에 小結을 두었다. 國勢의 危急함에 대한 警懼를 강조한 2단락 소결에[62] 이어서 天命을 언급하면서 “경외하고 검약하는 자는 하늘이 사랑하고 도와주며, 방일하고 사치하는 자는 하늘이 미워하고 버립니다.”라고 명시했다.[63] 이어서 경외와 검약에 대해 논하고 나서 “경외와 검약은 참으로 오늘날에 있어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이요, 한때의 심한 병폐가 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이 먼저 살피고 속히 변화하지

62) 林泳, 『滄溪集』 권4, 「應旨言事疏」, “2-4-(5) 天下之事勢極重者難回, 時已晩則無及. 此時救亡圖存之策, 豈可以容易言之, 安徐爲之哉? 臣誠凡愚, 雖有憂國之心, 實乏救時之才, 晝夜思度, 罔知攸濟, 而區區淺慮, 竊獨以爲殿下必有如履薄氷・如坐漏船之念, 而必行常情所甚難之事, 必納平日所厭聞之言, 然後庶可以救此時勢也.”

63) 같은 글, “3-1 臣竊觀自古國家興廢之際, 必有天命栽培傾覆於其間, 而人力終莫能勝, 則爲今之計亦莫急於祈天永命矣. 夫敬畏儉約者, 天心之所愛助也; 放肆奢泰者, 天心之所憎棄也. 且國勢方壯・天命方新之時, 則雖或間有放肆奢泰之君, 其國不至遽亡, 而若此危急之際, 則必以至敬畏之心, 行至儉約之事, 庶幾其回怒予之天而振垂亡之國. 此理所必然, 可不深念乎?”

않아서는 안 되니, 그 첫 번째는 성심이 사사로운 것에 치우침을 떨쳐 내지 못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조정의 명령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라고 3단락을 맺음과 동시에 이어지는 4단락의 주제를 미리 제시했다.[64] 두 가지 병폐를 제거하는 데에서 나아가 국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君德, 朝廷, 安民, 制兵의 네 가지 분야에 대한 治規의 定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어지는 단락의 주제어인 大進聖學, 大肅朝綱, 大得民心, 大修軍政의 네 가지 분야를 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65] 대단락 안에서 소단락을 이어갈 때도 이처럼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뒤 이어지는 소단락의 주제어를 미리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66]

또한 같은 주제 내에서 정의와 일반론을 제시한 뒤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구사했다. 예컨대 大臣의 바람직한 역할 네 가지를 제시한 뒤[67] 지금 大臣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68] 그 해결책으로 大臣들이 君德 위한 직언을 올리고[69] 大臣들이 관료 관리와 백성 구제, 변경 방어에

---

64) 같은 글, "3-4 夫畏敬儉約固爲今日之本根要務, 而一時之所甚病者又有在焉, 尤不可以不先察而亟變之也, 一則曰聖心偏私之未祛也, 二則曰朝廷命令之無信也."

65) 같은 글, "5-1 噫！聖心之偏係旣祛, 朝廷之命令必信, 則當時之所甚病者固已略去矣. 須先辨此, 可以及他, 而亦非謂只辨此事, 則便可救今日之國事也. 大抵今日國事, 雖使聖賢・俊傑當之, 必有難爲之歎, 以今日君臣上下之力量, 雖復竭心圖治, 臣猶恐其未必能濟. 而雖然, 兵戈搶攘之後, 尙有重恢之理, 若及此方內無事之日, 至誠畏敬, 痛自刻苦, 先祛一時之所甚病, 而又必速講治規而力圖之, 則亦豈無撥亂興衰之道哉? 古今爲治之規, 自有定法, 而言其大要, 不過曰君德也・朝廷也・安民也・制兵也. 今雖當危急之時, 亦不可舍此定法, 別求他術. 而但時勢如此其危急, 則須於定法之中, 必下百倍之功, 方有所救濟矣. 故臣敢論治規曰必大進聖學, 大肅朝綱, 大得民心, 大修軍政而後可, 誠以大火將發, 非勺水之能禦, 篤疾阽危, 惟暝眩爲可救也. 臣請爲殿下, 更詳陳之. 願殿下無厭其支離而一一詳察焉."

66) 같은 글, "5-2-(1) 夫所謂必大進聖學而後可者, 何謂也? 不興至治, 不足以救極亂; 不修至德, 不足以興至治, 而欲修至德, 非大進學, 不可能也. 故今日之事, 臣輒曰必大進聖學而後可, 若論進學之方, 則臣自前歲進見之初, 輒以立志・力行・致知三者, 反復爲殿下論之, 蓋進學之方其大槪不外是矣."

67) 같은 글, "5-3-(2) 責勉大臣 (ㄱ) 其曰責勉大臣者: 今日大臣, 雖皆人望, 論其相業, 不啻未盡, 臣請言之. 宰相之任本在於上輔君德, 下董百僚; 內撫萬民, 外禦隣敵, 而若夫簿書細務・循例職事, 雖勤不足貴也."

68) 같은 글, "5-3-(2) 責勉大臣 (ㄴ) 今殿下未免時有偏係之失, 而大臣只務承順, 未聞有正色極諫之事. 卿大夫亦豈無能否之別? 而大臣每拘顏情, 不肯爲嚴明黜陟之事. 生民之苦困日甚, 而曲從有司恤費之言, 致令殿下愛民之德意, 常反汗而不下究; 境外之憂虞已深, 而全無先事防備之擧, 徒以目前尋常之小事, 費日月而不自惜. 至於近日, 天災如此, 而舊例引咎之疏, 亦不復得聞, 此亦可見其自任之淺也. 以此規模氣象, 雖處泰寧之世, 尙猶可憂, 況今時乎?"

전념하도록 책면하는[70]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5단락에서 네 가지 정법과 각각의 조목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일관되게 견지되었다.

임영은 왕을 설득하기 위한 글인 소차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사법인 抑揚法을 이 글에서도 많이 구사했다. 1-2에서 國家의 危亂에도 두려움을 모르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求言한 것을 높이 칭송한 뒤,[71] 그러나 國勢의 危急에 비해 왕의 警懼가 未盡하다고 지적하면서 이하 논의를 여는 부분이 그 사례이다.[72] 숙종이 進宴을 거행하고 正殿 修改를 진행하는 것이 사치스러운 사대부들의 自耽遊衍, 窮極土功과는 차별됨을 인정하고 豐呈을 進宴으로 축소하고 伐材을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높이 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중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함을 비판한 뒤 바로 이것이 왕의 警懼가 未盡함을 알 수 있는 지점이라고 몰아세워 지적하는 부분에서는[73] 孟子의 화법을 연상시키는 억양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경연 때 숙종이 언급한 慕效之意를 상기하면서 立志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나서[74] 하지만 생각만 있고 힘써 구하는 정성이 없으니 진정한

69) 같은 글, "5-3-(2) 責勉大臣 (ㄷ) 然此非獨一時一人之過漸染風習. 其來蓋久, 而亦殿下責勉之道, 大有所未盡而然也. 臣願殿下一日赫然, 先以朝綱日頹之事, 自反自責, 而又召大臣, 推誠責勉, 若曰"凡寡躬有過失, 無問隱顯巨細, 必以極言, 無或依阿, 以重吾過. 卿等忠告之言, 雖至難之事, 予豈不從乎? 自此虛心敬聽, 一倍前日, 雖或過直, 不少厭若", 則大臣本皆願忠體國之人, 亦豈不以弼違格心爲己任哉?"

70) 같은 글, "5-3-(2) 責勉大臣 (ㄹ) 又曰'凡玆六卿及諸大夫賢否功過, 予難徧察. 進退予奪, 將惟大臣是聽, 無或私囑, 以取輕侮; 無或敷同, 以成壅蔽, 使其尊嚴體統, 顯加黜陟, 一如祖宗時名相之爲', 則大臣旣承非常激勵之敎, 必不敢有苟且比周之事矣. 又令盡將細務, 一付該曹, 而惟以極力救民・及時固圉爲事, 旣竭心思, 又集衆慮, 日夜措畫, 確實施行, 則民瘼可去, 邊虞亦猶可及備也. 如是責勵, 而猶有不克對揚者, 雖斥退之可也."

71) 같은 글, "1-2 臣竊見近者天災孔慘, 國事罔極, 而君臣上下殊無警懼之事, 臣誠過慮以爲國家危亂之機將迫, 故人情如醉, 不復知畏, 以此愈切寒心矣. 今殿下惕然動悟, 罪己求言, 只此警懼之一念乃所以回天怒・延國命之基本也. 宗社生靈, 不勝幸甚."

72) 같은 글, "2-1但念國勢之危急已到窮極之境, 實非平平警懼・略略修省所能救濟其萬一. 臣之所憂, 尙恐殿下警懼之意, 猶有所未盡也. 何以言之?"

73) 같은 글, "2-2-(3) 今時士大夫鮮有遠慮, 讌集之樂・興作之事, 反有加於昇平之世, 時屈擧贏, 甚非佳兆. 今又自上亦爲此擧, 則雖與自耽遊衍・窮極土功者固有差別, 亦豈今日之所當爲乎? 且降豐呈爲進宴, 伐材而姑不始役, 旣出警懼之意, 而其不能卽止不爲者, 何也? 臣以此知殿下警懼之意猶有所未盡也."

74) 같은 글, "5-2-(2) 立志 (ㄴ) 臣尙記去歲春間, 忝侍講席, 一日講《詩》首卷訖, 臣進曰: '殿下見文王齊家

立志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도[75] 억양법의 사례다.

이 상소문은 매우 치밀하게 구성되었지만, 일부 반복되는 내용이 보인다. 예컨대 逃故와 兒弱, 軍布 문제를 朝廷의 命令에 신뢰가 없는 사례로 들었는데,[76] 다시 민심을 얻는 방법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다시 언급한 것이[77] 그 예이다. 進宴과 正殿修改의 문제를 숙종의 警懼가 未盡함을 알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는데[78] 根本要務의

治國如此, 意思若何? 殿下卽下敎曰: '每見聖賢行事, 常有慕效之意.' 臣心竊喜, 至今不能忘. 只此慕效之意卽所謂志也."

75) 같은 글, "5-2-(2) 立志 (ㄷ) 但念臨書覽古之際, 雖有一端慕效之意, 而常時方寸之間, 若無全體親切之志, 則亦豈立志之謂哉? 人苟立志, 則凡事理之所已知者, 必欲力踐, 所未知者, 必欲求知, 不待徵於行事得失, 而卽其辭色談論之間, 必有懇惻可見之意象. 而今殿下未有是也, 此殆殿下之志未立焉耳. 臣願殿下深考孟子告滕公之言, 而體認性善道一之理; 又考程・朱戒時君之疏, 而領略正身治世之規, 必以躬修至德・身致至治爲志焉. 如此則不待人之指斥, 而自然知己之所不足; 不待人之勸勉, 而自然有奮勵不息之功矣. 此固進學之最初端緖, 而邦之興替亦決乎此而已."

76) 같은 글, "4-2-(1) 朝廷命令之無信 사례 (ㄱ) 至於朝廷命令之無信, 則臣請復得而悉數之. 向在更化之初, 朝廷固有意乎革弊便民之政矣, 首下朝旨, 只令査覈逃故[亟令州縣, 査覈軍保公賤之逃故者, 本其德意, 蓋甚盛也. 然當初朝旨, 只令逃故], 而未嘗使之區別其親族有無也. 及其査覈上聞, 則又令査覈其親族有無, 雖明知其逃故如有四寸以上親屬者, 竝不以逃故論, 而逃故者之役布, 專責於其切族, 則以無多之切族, 應不貲之役布, 受苦偏重, 呼冤倍甚, 反不如徵疎族隣里之時, 猶得以衆力分供也. 此其無信者一也, 而其毒民益重矣. (ㄴ) 當初査覈, 固將以永永蕩滌也. 後來只免其年之役, 自翌年, 又徵捧如前. 初不査覈則已, 旣令査覈, 而朝廷已審其爲逃故, 則更以何辭又令依前出役哉? 此其無信者二也, 而其害仁又甚矣. (ㄷ) 兒弱之比逃故則差有間矣. 雖其黃口應役, 所不可忍, 應役自幼者, 老除又早, 則民之病之亦稍輕矣. 朝廷若慮經費之難繼, 則初不擧論猶之可也, 今者初旣令査出十五歲以下矣, 俄而又下令曰"前令誤耳", 更令査出十一歲以下, 州縣眩於奉行, 小民不勝騷擾. 俄而又令卽充其査出兒弱[兒弱査出]之代, 州縣誠有公閑丁壯可充兒弱之代者, 當初旣以兒弱爲軍, 此其勢不得不以兒弱代兒弱, 而又不敢明言其爲兒弱也. 彼旣査出之兒弱, (則只過數歲, 亦當應役, 而唯此充闕之兒弱,) 則又不以彼之應役而便得減免也. 其事初若爲民, 其實終成罔民. 此其無信者三也, 而卒難免於聚斂附益之歸矣. (ㄹ) 軍布升尺本非舊制, 由麤至精, 從短及長, 積至今日, 民不堪苦. 幸而減定升尺之論, 發於元老大臣之箚, 則講究潤澤, 務推實惠斯可也. 朝廷旣慮其必有窒礙, 而姑且聽從, 遽爲頒示, 未經數月, 旋卽寢罷, 使中外顒望之兆庶, 曾未蒙一番寬減之實惠. 其怨望當如何也? 是則不但欺民, 其欺建議之人亦甚矣. 此其無信者四也, 而其疎略顚倒之狀, 益可羞矣."

77) 같은 글, "5-4-(3) 大得民心의 방법: 薄稅斂 (ㄱ) 得民心之道無他, 惟當薄其稅斂而已. 今民稅斂槪有兩途, 田役也, 身役也, 而二役之中, 身役尤重. 民心之含痛入骨, 往往至於思亂者, 皆以不堪身役之苦也. 殿下若用臣言, 一依更化初命, 令盡滌逃故, 姑寬兒弱, 而又推減定升尺之論, 特爲半減布匹之數, 使凡應身役者每[一]歲只納一匹之布, 則民心欣然如脫水火, 而樂生之心・愛國之念必[益]萬萬矣, 此最得民心之要務也."

78) 같은 글, "2-2-(1) 進宴之擧, 固出於孝愛之至情, 而此時此擧實非其時. 慈旨旣自不安, 群臣亦或爲

하나인 儉約의 절목으로 다시 언급하고,[79] 나아가 비용의 절감을 慈聖과 列聖께 고하라고 강조한 뒤,[80] 결어에서 상소 작성 중에 進宴 일시 중지 소식 들었는데 일시 중지에 그치지 말고 아예 정지할 것을 청했다.[81] 이러한 사례들은 구성상의 하자가 아니라 의도적인 강조로 보인다.

임영이 만언소에서 개진한 경세의 견해는 숙종의 구언에 응해서 일시적인 생각을 정리하여 올린 데 그치지 않는다. 節用해야 國勢를 지킬 수 있다는 견해는 두 해 전인 1680년에 이미 강조한 바 있고, 왕에게뿐 아니라 사대부에게 있어서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82] 그리고 이듬해인 1683년 4월 2일, 박세채가 입시해서 공안을 고치는 것이 근본이고 절용은 말단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83] 이견을 제시하면서 다시 절용을 강조한 것을 보면 이 문제를 임영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84]

임영이 이처럼 절용을 강조한 것은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었다. 이 상소문에서

言, 則殿下何不勉抑聖情, 姑寢成命, 以俟憂虞之少間乎? 2-2-(2) 正殿修改, 雖云本非得已, 旣無朝夕頹壓之慮, 則其視今日國勢, 猶未甚危也. 殿下何不收回工官, 卽罷動民伐材之役乎?"

79) 같은 글, "3-3-(1) 如此而尤須大爲刻苦儉約之事, 如避殿・減膳・撤樂等事, 雖曰文具, 亦愈於竝與文具而廢之者. 自今竝皆擧行, 而向所論進宴及伐材之役, 亦卽停罷. 又於常規之外, 力行貶損, 自御供器用膳服, 以至宮人宦侍便嬖使令之類, 不謀左右, 斷自宸衷, 皆減元數之半. 若太涼薄, 有難久堪, 則雖限十年權減亦可也. 十年之內, 一意圖治, 則民力必紓, 國勢必固, 量時度禮, 更議經制, 亦未晩也."

80) 같은 글, "3-3-(2) 殿下旣自爲儉約如此, 而又仰告于兩慈聖曰'國勢危急如此, 須大節損, 庶可保國', 則慈聖必不以一時裁省爲難, 而喜殿下有保防之遠慮. 又仰告于宗廟列聖如告慈聖, 而祭享儀物, 限年權減, 則祖宗陟降之靈必且悅豫於冥冥之中, 而嘉殿下之能任負托矣. 如是而又戒飭宮闈, 一切痛禁侈靡之習, 而又召群臣, 具道節約之意曰'自宗廟享祀・兩殿供奉, 以及寡躬之服御, 予不得不裁損矣', 則凡爲臣子者誰敢不仰體聖心? 必不敢妄費一毫官物於常祿之外矣."

81) 같은 글, "6-4 臣方搆疏繕寫之際, 伏聞有進宴廳號姑罷之命, 臣不勝感歎. 夫以聖上孝愛之至情, 必當萬萬有缺然者, 而不待群下之更諫, 乃有是命, 此見聖上警懼之意日益加切也. 夫帝王大孝, 本以安保國家爲主, 一時進宴, 未足爲悅. 願益篤警懼之意, 推及他事, 以爲救時保邦之大計, 以追古聖王達孝, 無爲觖然於此擧之停罷也. 臣又惟姑罷廳號之敎, 尙有未慊於人心者, 豈姑罷廳號而稍待星變之小弭, 卽欲復令擧行耶? 抑以觖然之深, 言語辭令, 自不覺其如此耶? 若眞有姑罷其號, 將復擧行之意, 則此其警懼亦甚不誠實矣, 非但無以感回天心, 消弭災沴, 亦恐聽言臨事之際, 無處不爲病根也. 伏願聖上更下明敎, 快示停罷之意, 而凡事必皆務誠實焉."

82) 林泳, 『滄溪集』 권14, 「答李伯吉[庚申]」.

83) 『숙종실록』 9년 4월 2일.

84) 林泳, 『滄溪集』 권7, 「答玄江[壬戌]8」.

民이라는 글자는 총 78회 사용되었다. 治規의 定法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大得民心 부분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로부터 모든 부분에 걸쳐 사용되었다. 숙종의 문제의식을 높이기 위해 강조한 國勢의 문제는 “지금 國勢는 기울어 가는 큰 집과 같아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85]라고 언급하곤 한 것처럼 임영이 일관되게 피력한 지론이었는데, 이 역시 평소 백성들의 실상을 보며 품은 생각이었다. 다음은 1682년 나주에 머물 때 보낸 서신이다.

> 지난날 조정에 있을 때에는 실로 時事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눈앞에 응대할 일이 많아 시사를 우려하던 마음을 때때로 홀연히 잊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고향으로 돌아와 백성들이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실상을 직접 보니, 일없이 한가한 가운데에도 국가의 형세와 시절의 우환을 자연 잊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물이 새는 배나 장막 위에 집을 지은 제비와 같이 위태롭다는 옛사람의 가르침이 실로 실제의 말이라는 것을 더욱 징험하였습니다.[86]

1688년 藥石이 될 만한 말을 해 달라는 남구만의 요청에 의해 보낸 서신에서 임영은 다시 한 번 자신의 경세에 대한 견해를 君心과 朝廷, 그리고 士, 民, 兵의 다섯 가지로 서술했다.[87] 그 구성은 만언소의 4단락에서 개선해야 할 병폐로 지목한 聖心偏私之未祛와 朝廷命令之無信, 5단락에서 治規의 定法으로 제시한 大進聖學, 大肅朝綱, 大得民心, 大修軍政과 같다. 만언소 작성 이전부터 이후까지 임영의 경세 견해가 일관됨을 보여준다.

임영의 만언소를 본 숙종은 격노하여, 소장을 留中하고 내려보내지 않았다.

> 두 분의 慈殿께 바치는 물건은 원래 풍부하고 사치한 것이 아닌데, 하물며 가까스로 헤아려서 감한 후에 또 뒤따라 재량하여 줄여야 한다고 말한 것은 매우 未安한 것이 아니겠는가? 宗廟의 享祀를 임시로 감한다는 말은 이것이 무슨 말인가? 예전에 子貢이 告朔에 희생으로 쓰이는 羊을 없애고자 하니, 夫子께서 이 예식마저도 마침내 없어질까 하여 애석해한 바가 있었다. 실효가 없이 낭비

85) 林泳,『滄溪集』 권7,「上玄江[壬戌]」.
86) 같은 글.
87) 林泳,『滄溪集』 권9,「與南領相[戊辰]」.

하는 것도 오히려 또한 이와 같았으니, 하물며 大廟의 享祀는 얼마나 큰 일이고 어떠한 禮制인데, 재량하여 감하도록 곧바로 청한 것은 더욱 말할 바가 못 된다.[88]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숙종의 警懼가 未盡함을 알 수 있는 근거이자 根本要務의 하나인 儉約의 조목, 그리고 결어에서까지 강조한 進宴의 문제였다. 검약을 강조하는 단락에서 임영은 "두 분 慈殿께 '국세의 위급함이 이와 같으니 모름지기 크게 節損을 해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우러러 고하신다면, 자전께서도 반드시 한때의 감손을 어렵게 여기지 않으실 것이요, 전하께서 나라를 보존하려는 원대한 생각을 지니고 계심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종묘의 열성조께도 자전께 고하신 것과 같이 우러러 고하시고 제향 때의 儀物을 연한을 정해 임시로 절감하신다면, 종묘에 오르내리는 조종 영령들께서도 반드시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요, 열성조께서 부탁하신 이 나라를 맡아 다스려 내심을 기뻐하실 것입니다."[89]라고 썼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임영 역시 자신의 소차 내용이 상례를 넘어선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국세의 위급함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발본색원하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먼저 畏敬하고 儉約하여 天心을 감동시켜 돌리는 의리를" 말했고 그 검약의 일단으로 두 분 자전과 종묘에 바치는 물건까지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건의한 것이다.[90] 임영이 보기에 모든 병폐를 개혁할 수 있는 출발점에 놓인 것이 숙종의 결단이었다. 聖學의 관점에서 왕의 마음이 至公無私하지 않고서는 그 뒤의 어떤 논의도 무의미할 뿐이다. 功利를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당장은 부분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을 도외시한다면 결국 空論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영으로서는 왕의 마음이 公과 私로 갈리는 예민한 지점을 적시했던 것인데, 이 지점이야말로 숙종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숙종이 이 상소를 留中한 이유는 환관의 문제에 대한 언급 때문이기도 했다. 이

---

88) 『숙종실록』 8년 8월 14일.

89) 林泳, 『滄溪集』 권4, 「應旨言事疏」, "3-3-(2) 又仰告于兩慈聖曰'國勢危急如此, 須大節損, 庶可保國', 則慈聖必不以一時裁省爲難, 而喜殿下有保防之遠慮. 又仰告于宗廟列聖如告慈聖, 而祭享儀物, 限年權減, 則祖宗陟降之靈必且悅豫於冥冥之中, 而嘉殿下之能任負托矣."

90) 林泳, 『滄溪集』 권7, 「答玄江」.

부분에 대해서 임영은 “近習 한 조목에 대해서 또한 반드시 진심을 다해 말한 것은, 오늘의 고질적인 폐단이 이미 여기에 있는 듯해서 성심으로 말을 다 하여 혹시라도 살펴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朱熹의 모범을 들어서 받은 은혜가 이미 깊다거나 近密의 자리에 있다고 하여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모두 찾아내어 말해야 함을 강조했다. 숙종이 이 부분에 예민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분명하게 지적한 것이다. “대개 본래는 과격하게 하거나 비밀을 들춰내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지만 반드시 말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한 뜻을 굽혀 회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성상께서 꺼리는 일을 저촉한 부분이 있었을 뿐입니다.”라는 말에서 임영의 이러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91]

우의정 김석주가 애초에 부득이하게 환관의 힘을 조금 빌려 쓴 정황을 낱낱이 진달하고 “일이 다 끝난 뒤에 아래에서 만약 환관을 이용해 일을 해결하는 길을 오히려 남겨 둔다면 죽어도 죄가 남을 것입니다. 상께서도 응당 깊이 유념하여 내버려 둔 채 점점 자라게 하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라고 고하면서 임영의 상소문을 내려 달라고 청한 뒤에야 숙종은 관계 기관에서 읽을 수 있도록 내려보냈다.[92] 이로써 임영의 만언소에 대한 처리 절차는 일단락되었지만, 경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올렸음에도 왕의 분노만 샀을 뿐 시행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임영은 더 이상 시무에 대한 간언을 올리지 않았다.

Ⅴ. 結: 임영 소차의 의의

임영은 평생 성리학에 침잠한 학자였다. 그는 李睟光의 『芝峯類說』에 대해서 “내가 생각건대 배우는 사람은 깊이 연구하여 스스로 깨달은 실질적인 내용이 있지 않으면 글을 짓고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없다. 기상이 경박하여 道와 멀어졌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원래 안목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서 코끼리를 더듬듯이 요량한 것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93]라고 논평했다. 自得으로 성리의 道를

91) 같은 글.

92) 같은 글.

93) 林泳, 『滄溪集』 권25, 「日錄 · 丁未」.

추구하지 않고 백과전서식 지식을 나열하는 것은 학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관점이다. 전술한 것처럼 李植의 소차에 대해 功利의 함정에 빠져있다고 비판한 것 역시, 임영의 경세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 지향을 지녔는지 보여준다. 임영은 결과와 효용보다 동기와 태도를 중시한 전형적인 성리학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임영은 과거로 입신했다. 산림으로 자처할 수 없고 出處의 사이에서 긴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숙종의 인정을 받으며 본인의 정견을 시행할 가능성이 열렸지만, 그 기대는 얼마 가지 못했다. 3~4년의 짧은 出仕 기간에 임영은 여러 소차에서 時事를 논하여 건의했고 이를 스스로 마무리한 것이 바로 萬言疏였다.94)

소차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임영 본인도 소차의 내용뿐 아니라 서술 전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고 상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숙종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는 면에서 만언소를 비롯한 임영의 소차들은 본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글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임영은 숙종의 감정적 반응을 몇 차례 겪은 뒤에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뇌관을 건드리는 강도 높은 직설로 일관했다. 그렇다면 임영으로서는 설득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목적이 있었던 셈이다.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자세로 과감하게 던진 주된 내용은 바로 聖學의 經世 의식이었다.

이는 朱熹의 戊申封事를 모범으로 하고 李珥의 萬言封事에서 趙憲의 6번에 걸친 萬言疏, 송시열의 己丑封事, 李惟泰의 己亥封事에 이르는 전통을 배경으로 한다.95) 임영이 강조한 貢納과 身役의 개혁은 이들 율곡학파의 정견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주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비교 분석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임영의 소차가 지니는 변별적 위상을 구명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그 핵심 주제에 관통하는 爲民과 聖學의 정신을 당대의 현안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정연한 논리로 구축한 전모를 살필 수 있었다. 임영은 師友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상호 배타적 독선을 경계하고 자득에 의한 절충과 보합을 추구했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과 사색에 의해 얻은 聖學의 지향에

94) 그 뒤에도 관직 제수는 이어졌고 지방관 등의 자리에 부득이 부임한 적도 있지만 중앙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직에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95) 박문준, 「율곡학파 경세론의 도학적 경세정신」, 『율곡학연구』 43, 율곡학회, 2020; 오항녕, 「조선 중기 경세론의 현안과 그 전개」, 『사학연구』 147, 한국사학회, 2022.

있어서만큼은 한 치의 타협도 없었다. 임영이 만언소에서 숙종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 분명한 두 자전의 경비 절감과 환관 배제 문제를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민심을 얻기 위해 節用해야 하며 그 출발은 군주의 公心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聖學의 근본이 서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소차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본고는 소차의 작성 배경과 주제 구현 방식 및 소통 양상을 통해서 임영이 지녔던 경세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었다. 임영의 소차는 그가 평생 엄격하게 매진한 학문의 일관된 표출이었으며, 출사와 관련된 언사와 행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17세기 후반 조선의 현실을 개혁하는 데에 임영의 이러한 논의가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다만 성학의 엄정한 기준으로 궁중 예산과 환관, 척신, 공신의 문제, 조세와 병역, 인사 제도와 국방 체제 등의 현안에 대해 임영이 내린 세부적인 진단과 대안들은 그것대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임영은 물러난 뒤에도 나주 지역 백성들의 어려운 실상을 보며 국가적 위기의식에 바탕을 둔 자신의 정견을 더욱 절실하게 확인하였다. 그런 면에서 임영의 소차는 爲民을 근간으로 하는 聖學의 경세 의식이 도달한 구체적인 견해가 총체적이고 정연하게 제시된 예라고 할 만하다.

투고일: 2023.10.30 심사일: 2023.12.03 게재확정일: 2023.12.26

참고문헌

林泳,『滄溪集』,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4
____,『滄溪集』, 한국문집총간 159, 한국고전번역원, 1995
____, 권헌준 외 10인 공역,『국역 창계집』1~8, 한국고전번역원, 2015~2019
金壽恒,『文谷集』, 한국문집총간 133, 한국고전번역원, 1994
董仲舒,『春秋繁露』, 中華書局, 1966
朴世采,『南溪集』, 한국문집총간 138~142, 한국고전번역원, 1995
朱熹,『晦庵集』, 中文出版社, 1979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sjw.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김광순,「창계의 생애와 문학」,『퇴계학과 유교문화』14,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1986
박래호,「창계 임영 선생의 생애와 사상」,『향토문화』21, 향토문화개발협의회, 2001
박문준,「율곡학파 경세론의 도학적 경세정신」,『율곡학연구』43, 율곡학회, 2020
송혁기,「辭職上疏文의 문학적 연구를 위한 일고」,『한국한문학연구』48, 한국한문학회, 2011
_____,「災異 관련 應旨上疏文의 관습과 수사」,『동아시아고대학』33,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오종일,「창계 임영의 학문과 학술사적 위치」,『고문연구』12, 한국고문연구회, 1999
_____,「창계 임영의 학문과 性理說」,『동양철학연구』20, 동양철학연구회, 2000
오항녕,「조선중기 경세론의 현안과 그 전개」,『사학연구』147, 한국사학회, 2022
유연석,「牛溪 후학의 栗谷 성리학 이해와 비판-박세채, 조성기, 임영을 중심으로」,『율곡학연구』23, 율곡연구원, 2011
이동린,「許穆의 春秋災異論에 나타난 漢學的 경향」,『한국사론』49,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3
이동희,「우계 성혼의 性理說과 조선후기 '折衷派'」,『동양철학연구』36, 동양철학연구회, 2004
이석규,「朝鮮初期의 求言」,『한국사상사학』15, 한국사상사학회, 2000
_____,「朝鮮初期 應旨上疏에 나타난 制度論」,『조선시대사학보』39, 조선시대사학회, 2006
_____,「연산군·중종대 求言의 성격 변화와 그 의미」,『사학연구』88, 한국사학회, 2007
이연순,「창계 임영의「日錄」에 나타난 독서 기록의 특징」,『한문학논집』35, 근역한문학회, 2012
이영호,「조선후기 주자학적 경학의 변모양상에 대한 일고찰-창계 임영과 식산 이만부의『大學』해석과 異端觀을 중심으로」,『한문교육연구』1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1
_____,「창계 임영의 因文入道論 고찰」,『민족문화』56, 한국고전번역원, 2020
이우성,「滄溪集 解題-求道者의 사색과 철학」,『국역 창계집』, 한국고전번역원, 2015

이종범,「창계 임영의 學問과 政論」,『한국인물사연구』9, 한국인물사연구소, 2008
임형택,「퇴계선생어록 해제」,『퇴계학보』119, 퇴계학연구원, 2006(「큰 스승의 일상과 하신 말씀,『퇴계선생어록』_임영」,『우리 고전을 찾아서』, 한길사, 2007)
정우봉,「창계 임영 자료의 문헌적 검토와 산문 창작의 일면」,『민족문화』56, 한국고전번역원, 2020
조정은,「창계 임영의 개인 수양서로서『논어』읽기」,『한국실학연구』37, 한국실학학회, 2019
진재교,「창계 임영의 한시 연구」,『민족문화』56, 한국고전번역원, 2020
최재남,「창계 임영의 삶과 시 세계」,『한국한시작가연구』12, 한국한시학회, 2008
함영대,「창계 임영의 내면적 성찰과 경학」,『한국실학연구』37, 한국실학학회, 2019
허남진 · 박성규,「신유학의 현실문제 인식-格物論, 鬼神論, 災異論을 중심으로」,『인문논총』45,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1

A study on Changgye Lim-young's socha

Song, Hyok-key

Lim-young(林泳, 1649~1696) was a Neo-Confucian scholar who intended to devote his life to study. However he passed Gwageo exam(Imperial examination), so he had no choice but to go back and forth between chulsa(出仕, starting the work) and sajik (辭職, quitting the work). Between this process, Lim-young wrote a socha(疏箚, memorial to the throne) about sajik and nonsa(論事, discussing a matter). Lim-young once wanted to go to royal court with King Suk-jong's approval and implement kyungse's ideal, but the expectation didn't last long. Rather than reflecting his opinion, he have had several situations where only King Suk-jong's emotional response has returned. After this situation, Lim-young wrote out his views on man-eonso(萬言疏, socha in 10,000 words) about kyungse(經世) and made a proposal. However King Suk-jong's reaction was negative, so Lim-young didn't show up in royal court again.

I comprehensively examined Lim-young's opinion about kyungse by reviewing the background of socha, how the topic is implemented, and communication aspect. Lim-young made diagnoses and alternatives to pending issues such as the court's budget, eunuch, Cheoksin(戚臣), gongsin(功臣), taxation and military service, personnel system, and defense system. Through the precise composition of paragraphs, the emphasis on a clear platform, and the appropriate use of the accent method, the wimin(爲民) and seonghak(聖學) was closely linked to the specific issues of the time and built a well-organized logic.

Lim-young was not only cautious about selecting the content of the socha, but also interested in the strategy of narrative and expression. Lim-young's literary talent has been so famous since he was young, and socha was the style of writing that consistently exhibited with high purity. However, even after experiencing several emotional reactions from King Suk-jong, he wrote a rather intense socha. The main content of his bold socha, which he posted with the attitude that he could leave at any time if the king did not listen, was the seonghak's kyungse consciousness based on wimin. He repeatedly

emphasized sensitive issues that were difficult for the King Suk-jong to accept at man-eonso. The reason why he repeatedly emphasized the problems was that he had to economize it to win public sentiment, and Lim-young thought that the start depends on the king's gongshim(公心). Lim-young's socha was a consistent expression of his rigorous studies throughout his life, and what he said and showed in relation to chulsa is understood in the same context.

Key Words : Lim-young(林泳, 1649~1696), socha(memorial to the throne), sajik(quitting the work), nonsa(discussing a matter), man-eonso(socha in 10,000 words), seonghak(聖學), kyungse(經世)